

제 533 호
1975.12.1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편집 : 문화공보실장 초 용 하
전화 75-73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규 칙	
제 1538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사용토징수조례시행규칙..... 3
제 1539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개정규정..... 4
제 1540 호	서울특별시 서경해선 추진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 4
○관리규정	
제 51 호	(지하철운수사업관리규정) :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수종업원 경기규정..... 5
○고 시	
제 196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 지적승인..... 13
제 202 호	1975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고시..... 15
제 203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6
제 204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19
제 205 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및 지적승인..... 22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공	고		
제 292 호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변경 시행인가 공람공고.....	23	
제 293 호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23	
제 29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지정공고.....	25	
제 295 호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지급공고.....	26	
제 71 호	(동대문구공고) : 동민방위협의회 위원장 공인공고.....	26	
○사	령.....	31	

속

규 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로징수조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12월 11일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38 호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로징수조례
시행 규칙

서울특별시 시민회관 사용로징수조례시
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사용
로징수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의한 사용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획서 등 제출) 조례제 3 조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는 사용일 3일전까지 행사계획서
(집회허가서 첨부) 또는 집회대본(공
연인가서 및 오감인가서 첨부)을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냉난방사용기간) 냉난방사용기
간은 조례별표 제 3 호에 의한 기간
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4 조 (설비 또는 기기 관리) 사용자
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
코자할때에는 조례제 12 조에 의한
사건허가와 반입시의 검사를 철저히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귀장발행
의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게 한다.

제 5 조 (부속설비 조명사용구분) 조례별
표제 2 호에 의한 조명장치 사용에
있어 25 KW 이상 조명을 종합조명이
라하며 소, 무용, 연극, 오페라, 극극
및 이에 준한 공연물에 대한 조명
으로 20kw-25kw까지의 조명은 보통
조명이라 하며 학생등 비영리단체에
서 공연하는 공연물에 대한 조명으
로 20KW 이하의 조명은 기본조명이
라하며 행사 강연등 및 이에 준한
공연물에 대한 조명으로 한다.

제 6 조 (전기사용로징수) 사용자가 별
도의 전기기기를 반입사용시에는 조
례별표제 1 호에 의한 전기사용을 남

부함여야한다.

제 7 조 (입장세등 예치) 유로토 공
연키 위하여 입장권을 발매할 경우
에는 예매전액에 대한 입장세 및
원천세를 사전에 예치후 예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11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539 호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호중 단서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요시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미리
준감국장이 기획관리관 및 관련국장
의 합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얻
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서정혜신 추진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12월 11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540 호

서울특별시 서정혜신 추진위원회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서정혜신 추진위원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구성) 제 2 호중 "위원회"
다음에 "기획관리관"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서울
특별시 지하철 운수종업원 경기규정
을 이에 발령한다.

1975. 12. 25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사업
관리규정 제 51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종업원 경기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수분야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외주 양양으로 지식과 기
능을 향상시켜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고 역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여객수송의 안전, 정확을 도
모하는에 있다.

제 2 조 (경기의구분) 경기는 열차운전
경기와 역무경기로 구분한다.

제 3 조 (경기의 시기) 경기는 년 1회
로 하여 10월중에 시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각 경기일정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경기의 임원) ① 경기를 주관
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과
위원을 약간명을 둔다.

② 회장은 운영담당관, 부회장은 운수
과장으로 하고 임원은 본부 직권
또는 현업기관 소속직원중 부회장이
지정한다.

제 5 조 (경기임원의 임무) 회장은 경
기회무를 통괄 지휘하며 부회장은

은 회장을 보좌하여 경기전반의
시행계획과 성적의 심사에 입하며
위원은 경기에 관한 일체의 준비
및 경기의 집행사항 심사와 출제
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2 장 열차운전경기

제 6 조 (경기참가선수의 추천) 승무관리
소장은 자체 운전경기를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를 회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조 (경기의 심사) 경기참가선수
는 성적심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할 수 없다.

제 8 조 (경기차량의준비) 경기에 사
용하는 전차는 다음 상대로 준비
하여야 한다.

1. 운전대 출입문 중앙외판에 백
색지판 (가로 30mm 세로 1,602mm)을
수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2. 속도계에는 덮개를 덮어 심사
위원이 임의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로 하여야 한다.
3. 정지 위치의 측정선은 회장이

별도로 지정한다.

제9 조 (경기참가선수의 실적 및 채점변경) ①경기참가선수가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적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가 있을때

나.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때

②경기중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경기 또는 채점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일가가 불순할 때

나. 경기자의 책임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제 10 조 (경기의 종목 및 채점) 열차 운전경기의 종목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 종목별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의한 성적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계산한다.

- 1. 제동기 취급
- 2. 기기 취급
- 3. 운전 시분
- 4. 운전 속도

- 5. 출 표 점 점
- 6. 승 계
- 7. 경 지 위 치
- 8. 점 무 태 도
- 9. 지 문

제 3 장 역무경기

제 11 조 (참가선수자격) 경기참가 선수는 현업소속장이 3명이하의 인원을 추천해서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은 각역지도원 이상 간부를 제외한 역무 종사원으로 한다.

제 12 조 (경기과목) ①여객규정, 운전규정, 장표취급규정, 철도법 4종으로 하고 경기참가자는 전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과목은 응응에 의한 필기로 한다.

제 13 조 (명단제출) ①과 현업소속장은 경기참가자 명단을 경기개최일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단에는 참가자의 소속, 직위, 생년월일 및 근무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과목출제내용) 경기 각 과목의 출제내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여객규정 : 운임계산방법, 정산업무 개질철업무
- 2. 운전규정 : 열차운행에 관한 취급방식
- 3. 장표취급규정 : 운수수입 처리 과정
- 4. 철도법 : 여객운송권, 철도보호

제 15 조 (경기과목의배점) 역무경기의 종목별 배점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여객규정 150 점 만점
- 2. 운전규정 100 점 만점
- 3. 장표취급규정 100 점 만점
- 4. 철도법 50 점 만점

제 16 조 (채점방법) 경기의 채점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각 종목마다 필기시험 득점과 시간 득점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시간 득점은 필기시험 60점이상 취득한 경우 지정시간보다 빨리 제출한 것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①여객규정장표취급규정 : 1분마다 2점

②운전규정, 철도법 : 1분마다 1점

제 4 장 잡 칙

제 17 조 (경기사항보고) 회장은 각 경기시행후 5일이내에 그 상황 및 결과를 지하철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성적우량자의 표창상선) 회장은 각 경기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시상 또는 지하철본부장 표창을 상신토록 하여야 한다.

제 19 조 (표창자의 인사반영) 관리과장은 각급 경기에서 표창한 개인에 대하여는 근무명정 및 인사고과에 반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열차운전경기 성적심사기준		감 점 기 준	
항	목		
1. 제동기 취급특점 (100점)			
1)	제동기를 사용할때 제동개시초부터 제동변행률 각도 (SAP압력 2.0kg/cm ²)를 초과하였을때	1회에	10점
2)	비상제동을 사용하였을때 (비상사고 제외)		20점
3)	제동사용후 제단완해와 재증압을 3회이상하였을때		10점
4)	정차직전 정지위치를 맞추기위하여 증압하였을때		10점
5)	정차시 SAP 압력을 0.5kg/cm ² 이하로 하였을때		5점
6)	①호의 취급후 발전제동 표시등 점등전에 완해또는 증압하였을때		5점
7)	직통대 제동취급이 급격적이라고 인정되었을 때		3점
8)	제동사용으로 차물확주시		10점
9)	A. T. S 경보시 소내에 조치물하지 못하여 비상제동이 체결되었을때		20점
2. 운전조종 및 기기취급 특점 (100점)			
1)	제동을 완해치 않고 주간제어기를 상승시켰을때		5점
2)	출발전호 "부자" 취명후 3초이내에 시동치않았을때	매초마다	5점
3)	열차완전 정차전에 출입문을 열었을때	1회에	10점
4)	열차정차후 2초이내에 출입문을 열지 않았을때	2초초과하였을때마다 1초마다	1점
5)	출입문폐쇄후 3초이내에 출발전호 "부자"를 하지 않았을때		
6)	소정 정차시분을 5초이상 단축시켜 출입문을 폐쇄하였을때	5초초과시마다 1초마다	1점
7)	시동후 25K/日 이하에서 주간제어기를 3초치이상 상승시켰을때 (강제가선구간)	1회에	5점

항 목	감 신 기 준
8) "늦치"에서 40 초이상 운전하였을 때	40 초초과시때 20 초마다 2 점
9) 타행 표지 지점에서 주간 제어기를 OFF로하지 않았을 때	1 회에 5 점
10) 교직 "색슨" 구간에서 ADS 스위치를 전환하지 않았을 때	# 20 점
11) "교직" "색슨" 구간에서 역행...지선 방에서 역행취급을 하였을 때	# 5 점
12) 교교 "색슨" 지점에서 주간제어기를 OFF로하지 않았을 때	# 20 점
13) 운전사가 운전대에서 이석할 때 주간제어기를 켜지 않았을 때	
14) R ₁ 또는 R ₀ 신호현시로 사전 차치 않고 비상제동이 체결 되었을 때	# 20 점
15) R ₁ 또는 R ₀ 현시로 일단정차후 진입시 소정스위치 를 취급치 않았을 때	# 20 점
3. 운전시분 득점 (100 점)	
1) 구간 운전시분보다 조작 또는 지착하였을 때 조작 15 초 초과시 지착 15 초 초과시	# 5 초마다 1 점 # 5 초마다 2 점
2) 열차 지연시분을 회복하였을 때 가. 예고없이 회복하였을 때에는 조작으로 간주한다. 나. 예고후라도 회복예고시분보다 조작 또는 지착하였을 때에는 전(1)을 적용한다. 다. 서행으로 인한 지연은 제외한다.	# 5 초마다 2 점 # 득점가산 # #

항 목	감 전 기 준
<p>4. 운전속도 득점 (100 점)</p>	
<p>1)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때</p>	<p>초과 2 / 시마다 5점</p>
<p>2) 정거장진입속도가 35 K/H 이하로 저속도일때</p>	<p>저하마다 1점</p>
<p>3) ATS경보속도를 초과하여 경보 "차임벨"이 울렸을때</p>	<p>1회에 5점</p>
<p>4) 서행개소에서 지정속도를 감속함에 있어 방법이 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때</p>	<p>#</p>
<p>5) 운전속도를 단속시켜 속도계표시와 과부속 2K/H일때</p>	<p>1 회마다 3점</p>
<p>5. 충격득점 (100 점)</p>	
<p>1) 승동의 대소는 충격측정기에 의하여 감점한다. 다만 상하 혹은 좌우동과 진입시의 기계적충동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p>	
<p>2) 1호주진도하였을때 2호주진도하였을때 3호주진도하였을때 4호주진도하였을때 5호주진도하였을때</p>	<p>1 회 에 2 점</p>
<p>다만 2 이상이 동시에 진도되었을 때는 상호호주의 점수로 한다.</p>	
<p>3) 측정기의 규격 및 재질</p>	
<p>1호주 (30 × 13 × 75) 2호주 (30 × 13 × 70)</p>	
<p>3호주 (30 × 13 × 65) 4호주 (30 × 13 × 60)</p>	
<p>5호주 (30 × 13 × 55)</p>	
<p>(주) 재료는 "나왕" 목재로 하고 표면은 유리도된 강지판 370×150 로하고 측정시는 최후부 차량의 운전대 중앙에 설치하도록 한다.</p>	
<p>6. 정지위치 득점 (100 점)</p>	
<p>정지위치 측정지정역에서 지정장위 위치와 실제 정차위치와 실제정차위치의 차가 30cm 를 초과하였을때</p>	<p>매 10 마다 2 점</p>

항 목	감 견 기 준
7. 침부때도특점 (100점)	
1) 장내, 출발, 일완 신호기의 신호확인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1회에 2점
2) 1호이외의 신호확인시 환호를 결하였을 때	" 1점
3) 각종 운전취급지시표지 (타점, "행, 사구간 예고표 지등) 에 대하여 확인환호를 결하였을 때	" 1점
4) 운전대 출입문 표지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하였 을 때 (점등, 소등)	" 2점
5) 출입문 자속표지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 2점
6) ATS 15 K/H 및 ASOS 스위치 취급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 2점
7) 15 K/H 스위치로 운전시 기록을 결하였을 때	" 5점
8) 판타그라프 및 MCB 스위치 취급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 5점
9) 재충전 수입후 ATS전원표시등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 2점
10) 출고점검시, 기능시험시 환호를 결하였을 때 (전진, 후진)	" 2점
11) 교차 "색손" 운전시 MCB 차단 및 투입에 대한 지적환호를 결하였을 때	" 5점
12) 기타 지정된 환호를 결하였을 때	" 1점
13) 승무장무 점검상태 및 운전전담관계확인이 적당치 못할 때	" 5-10점
14) 출입문 폐쇄건호 각 취명을 결여시	" 2점

항 목	감전기준
8. 출고검사목점 (100 점)	
1) 제동편 투입시 축전지 전압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1 회에 5 점
2) ATS 15 K/H 스위치 ASOS 위치에 대한 시험을 결여하였을 때	5 점
3) Aux Complerer 가동을 결여하였을 때	5 점
4) 제동기 시험방법이 적당치 못할 때	5-10 점
5) 운전대의 각종 "스위치" 상태의 확인을 결여하였을 때	" "
6) 무전기 및 차내 전화기의 시험을 결여하였을 때	5 점
7) 제동통 행정 및 제동자 상태확인율 결여하였을 때	1 대차마다 1 점
8) 공기압측기 및 수변압기유 및 온도상태의 확인을 결하였을 때	1 회에 2 점
9) 예비휴 - 즈 정비상태 검사 결여	" 5 점
10) 연결기 및 잠바선 상태 점검 결여시	" 2 점
11) 비빔정비상태 확인결여 (복선기, 중간연결기, 디스크브소화기 등)	" 2 점
12) 소명장치, 냉난방장치 점검 결여시	" 5 점
13) 출입문 개폐기능 검사 결여시	" 10 점
14) 기능시험을 결여시	" 5 점
15) 수용계동기 차륜지의 완해 및 철거결여시	" 5 점
16) 한쪽 운전대만 시험 및 점검 하였을 때	" 20 점
17) MG, CM 의 운전상태 확인 결여시	
9. 시 분 득 점 (100 점)	
<p>기술 및 규정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시험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p>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19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호(73.4.4)의 권한 위임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면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1

서울특별시장

가. 노 선 조 서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가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1	1	10	1,080	성내 74-1	중남 240	
신설	소로	2	1	8	362	" 96	" 136	
			2		132	중남 168	" 222	
			3		620	" 202-2	" 137	
			4		180	" 287	" 228	
			5		506	" 227	" 260-4	
			6		264	성내 111-3	성내 126-1	
			7		268	" 142	" 29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상 점	비고
신설	소로	3	8	6	274	풍남 206-3	풍남 268-9	
			9		192	성내 329-1	" 340	
			10		442	" 319-3	" 356	
			11		446	" 270	" 352	
			1		120	천호 464-5	천호 464-18	
			2		274	" 462-3	풍남 96-2	
			3		264	풍남 95-1	" 123-2	
			4		132	" 119-3	" "	
			5		228	" 94-13	" 87-7	
			6		82	" 82-11	" 81-2	
			7		174	" 60-1	" 82-4	
			8		446	" 126-109	" 165	
			9		144	" 186-1	" 176	
			10		250	" 195-4	" 174-3	
			11		205	" 175	" 220-1	
			12		490	" 153-2	" 126-47	
			13		120	" 142-44	" 142-2	
			14		110	" 142-2	" 147-2	
			15		142	" 187	" 165	
			16		112	성내 98	광주 19	
			17		222	풍남 220-1	풍남 260-1	
18	42	" 223-1	" 223-1					
19	460	" 165	" 259-5					
20	510	" 163-2	" 259-5					
21	590	" 3043	" 23-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추원	연장	기	결	총	점	비고	
			22		160	중	남 206-1	중	남 282		
			23		240	"	283	"	306-4		
			24		228	"	277-1	"	261-1		
			25		250	성	내 116-5	성	내 294		
			26		240	중	남 263-1	중	남 224-5		
			27		250	"	306-3	"	268-7		
			28		160	"	268-4	"	287-2		
			29		208	"	268-2	"	324-1		
			30		370	"	263-2	"	268-9		
			31		70	성	내 323	성	내 300-2		
			32		114	"	300-2	"	265		
			33		720	중	남 237-4	"	350		
			34		140	성	내 318	"	315		
			35		140	"	318	"	313-2		
			36		290	"	296	"	311		
			37		424	"	293	"	353-2		
신	설	소	로	4	1	4	212	중	남 68-2	광	로 19
				3	38	6	82	중	남 258-2	중	남 277-2

○ 서울특별시고시제 202 호

1975년도 제 3 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5년
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
별회계 제 3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
산물 지방자치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1975.11.19

회 계 별	예 산 액
총 계	165,766,457
일반회계	101,547,790
특별회계	64,218,667
수택사업비특별회계	10,705,886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12,199,000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1,489,060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1,518,268
유로도로비특별회계	942,441
시민회관비특별회계	2,378,688
청소비특별회계	5,736,302
재해구호비특별회계	104,274
수도사업비특별회계	18,970,390
지하철운수사업비특별회계	10,174,358

○ 서울특별시고시제 20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66.6.21)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제 26 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12.10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4.19 공원입구 도로정비공사</p> <p>3. 사업규모 : 폭 : 8 ~ 10 m, 연장 : 1,355 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p>	<p>5. 착수및준공예정일 : 75.9.20 ~ 76.12.2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 주소성명 : 별첨 도지조서</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수유동				280-55	대	12	동송동 4-8	김현자의 2인	
2	"				280-56	"	18	"	"	
3	"				280-57	"	11	수유동산 1	이우보	
4	"				280-58	"	11	수유동 280-11	김재순	
5	"				280-59	"	11	수유동산 1	송세현	
6	"				280-60	"	10	수유동 279-203	최동철	
7	"				279-291	도	212	인천시신흥동 2가 54	장수근	
8	"				535-244	대	25	계기동 226	이달우	
9	"				535-245	"	21	수유동 535-73	박정현	
10	"				535-246	"	22	수유동 535-74	최종현	
11	"				535-247	"	25	종로 2가 23	김화순	
12	"				570-36	"	9	수유동 570	김광권	
13	"				568-44	"	14	수유동 568-28	장동윤	
14	"				568-45	"	6	수유동 568-17	서상준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5.	수유동				568-46	대	0.6	수유동 568-8	박의덕	
16	"				568-2	"	18	수유동 560-2	안동하	
17	"				568-15	"	1.1	수유동 560	안주호	
18	"				568-5	"	5.4	수유동 560	"	
19	"				568-49	"	20	수유동 560	"	
20	"				568-50	"	17	수유동 568-27	이석규	
21	"				568-51	잡	10	신당동 573-10	박정순	
22	"				568-52	대	30	신당동 52-82	조용구	
23	"				568-53	"	24	신당동 52-82	"	
24	"				568-54	"	19	수유동산 38	문경호	
25	"				567-53	"	10	신당동 52-82	조용구	
26	"				563-59	잡	16	하월곡동 68-2	안수명	
27	"				563-61	"	0.8	하월곡동 68-2	"	
28	"				563-4	대	81.6	수유동 349	오용택	
29	"				563-64	"	0.6	수유동 563-33	이성용	
30	"				563-65	"	17	수유동 563	최봉덕	
31	"				563-66	"	24	수유동 563	"	
32	"				563-67	"	46	명륜동 1가 88-6	김동지	
33	"				563-68	잡	19	수유동 563	김기원	
34	"				563-69	대	58	수유동 280-17	이상언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5	수유동				563-70	간	34	하월곡동 68-2	안수경	
36	"				563-71	간	23	"	"	
37	"				563-72	"	14	수유동 563-11	서영식	
38	"				563-56	"	2	신당동 73-10	박정순	
39	"				564-11	진	3	죽번동 118-1	모명선	
40	"				564-12	"	2	"	"	
41	"				563-6	터	36	수유 563	김기원	
42	"				산2-12	일	541		고본정일	
43	"				산73-7	"	573	안암동 482-21	권원식	
44	"				산73-8	"	244	신문로2가1-121	이성일	
45	"				산73-9	"	330	"	"	
46	"				산32-2	"	14	수유 32	박동국	
47	"				279-279	터	37	미아동 550-35	김옥순	
48	"				279-278	"	103	수유동 279-40	유원근	
계	48 필지						2,781.10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 2948 호(66.12.17)

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

부고시 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 관계 도시는 도봉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75.12.10

서울특별시 장

<p>1. 사업시행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p> <p>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양로 (가오교~4.19 공원입구간) 도로 확장공사</p> <p>3. 사업규모 : 폭:20m, 연장: 830m</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5.9.15 ~76.12.30</p> <p>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토지조서</p>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수유동			279	도	1	수유동 279-1	최상필	
2	"			278-16	"	2	중구소공동 45	대합주 대합공사	
3	"			278-17	"	3	수유동 280-23	장광천	
4	"			277-8	대	236	중구필동 2가 83-1	이정은	
5	"			320-2	전	442	수유동 38	허준	
6	"			321-2	"	198	"	허준	
7	"			318-9	대	39	돈암동 294-28	최순근	
8	"			317-17	"	21	"	"	
9	"			316-5	"	45	수유동 327-1	이병학	
10	"			316-7	도	8	"	"	
11	"			316-8	대	80	"	"	
12	"			330-2	전	2	안암동 41-8	강주희	
13	"			331-4	답	163	수유동 195	김호진	
14	"			332-8	전	8	청운동 15-13	조점순	

순위	소재지	분할전토지			분할후토지			소유자		성명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소		
15	수유동				333-2	대	76	수유동 333		이복순	
16	"				334-37	"	39	수유동 341-17		송광호	
17	"				338-36	"	51	수유동 338-6		이윤급	
18	"				338-37	"	41	원효로 2가 2-13		송영걸	
19	"				338-38	"	73	미아동 534-16		원남걸	
20	"				341-19	도	16	수유동 245		송광호	
21	"				340-6	전	24	수유동 359		박영근	
22	"				339-4	대	91	율지로 3가 291		김청자	
23	"				372-13	"	7	서대문구냉천동 171-1		함명연	
24	"				372-5	"	69	성동구산당동 181		최필동외 38인	
25	"				370-1	"	25	수유동 372		권광택	
26	"				338-39	"	3	수유동 343-2		강선동	
27	"				372-16	"	4	수유동 45		박남득	
28	"				370-7	"	3	수유동 345-2		김애원	
29	"				370-8	"	2	수유동 370-4		신승현	
30	"				367-6	"	5	수유동 367-1		대일산업 주식회사	
31	"				370-3	"	67	수유동 370-5		이태준	
32	"				381-4	"	30	수유동 381-2		박준현	
33	"				383-3	"	37	수유동 45		박창분	
34	"				385-9	"	46	수유동 385-1		서연엽	
35	"				382	전	2			김홍근	
36	"				339-1	"	29	수유동 371		손수만	
37	"				340-1	대	137	수유동 245		송광호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38	수유동				341-1	대	72	수유동 245	송광호	
39	"				332-7	전	48	철운동 15-13	조계순	
40	"				277-38	대	186	종로구전지동 83-4	주식회사한국 신탁은행	
41	"				285-2	전	3	성북동 83-17	계영철	
42	"				284-1	"	3	수유동 381	박남득	
43	"				278-14	대	8	수유동 산 2	임남현	
44	"				278-13	"	30	가정군하면현리 263	최필순	
45	"				278-12	"	25	수유동 278-1	안성란	
46	"				278-15	"	3		국유지	
47	"				278-10	"	20		"	
48	"				391-121	전	52	중정동 77-2 은의동 125-3	박문상 홍무동	
계	48 필지						2,486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5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가. 주차장 결정조서

제 123 호 (73.4.4) 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12. 12

서울특별시 장

위 치	면 적	비 고
도봉구 상계동 1138-5 및 1132-57 도봉구 우이동 180-1	신설 : 5,084 ㎡ 기정 : 4,482.5 ㎡ 추가 : 921 ㎡ 확정 : 5,403.5 ㎡	도시계획 도로계획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2 호

도봉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시행
인가공람공고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공고 제 127 호 (75.12.2) 로 사업변경 인가 공고된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 변경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와 관한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5. 12. 1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도봉토지구획정리 사업
-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일부

3) 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4) 변경사항 (시행면적)

지구명	당 초	변 경	비 고
도봉	2,685,648㎡	2,511,912㎡	제척 113,736㎡

나. 유의사항

- 1) 변경인가로 인한 금번 도봉 지구내 일부 제척된 지역은 일반지구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며
- 2) 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겠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가롭니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293 호

도시계획시설 (도시고속철도)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로 결정 고시된 용두동·갑심리 지내 1호선 인입선 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 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지하철본부 건설과에 비치하여 공람에 공하며 토지 및 건물 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 가 통합니다.

1975.12.10

서울특별시 장

(실시 계획 개요)

1. 사업시행처 : 동대문구용두동 75 의 12 호 - 답십리동 525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호선 인입선

3. 사업의 규모 : 인입선 = 9.6 = 1,005
지상정차장 = 20 = 210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수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7 일 이내 준공 76.12.31

6. 위치도 및 계획영면도 : 지하철본 부 건설과 비치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의 조서 및 지번 지국과 소유권 이 의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수 용 할 도 지 조 서

번호	원			수 용			
	지	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1	성동구용담동 172-2	대	70.2	성동구용담동 172-5	대		10.3
2	성동구용담동 175	대	443.1	성동구용담동 175-2	대		116.7
				" 175-3	대		8.7
	계						135.7

소 유 자			비 고 (구 번 지)
주 소	성 명		
경기도양주군별내면고산리 16	조 호 능	동대문구용두동 694-3 동대문구용두동 695-1	
서대문구순화동 7번지의 17	이 해 승		
경기도양주군별내면고산리 16	조 호 능		
서대문구순화동 7번지의 17	이 해 승		
경기도양주군별내면고산리 16	조 호 능		
서대문구순화동 7번지의 17	이 해 승		

◎ 서울특별시공고제 29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대외 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중 소재지 변경 및 회사명이 변경된 다
 을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 지정공고한다.
 1975.12.11
 서울특별시장

현 지 정			대 외 지 정			
지정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번호	변경내용	비고
317	부영전자공업(주)	최윤용	동대문송인동 183-13	107	종로구송인동 183-13	행정구역개편
319	화전실업(주)	박중화	동대문송인동 204-11	108	종로구송인동 204-11	.
328	(주)유미양행	진성준	동대문창신동 447-12	109	종로구창신동 447-12	.
484	상보염직공업(주)	조동식	성동구성수 2가 277-124	484	상보염직(주)	상호변경
490	화성섬유공업사	권오성	성동구농동 451-1118	317	동대문장안동 76-5	행정구역개편
618	남양물산(주)	홍건선	서대문신영동 239-5	110	종로구신영동 249	.
903	광동제약(주)	최수부	영등포시흥615-1	903	영등포구구로동 212-13	소재지변경
485	동림양말공업사	이용업	성동구성수동 1가 527	921	영등포가리동 470-8	소재지변경

◎ 서울특별시공고제 295 호

교육공무원공로퇴직수당 지급공고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공로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 중등 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 연령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
 가. 연 령
 1) 60 세 이상

2) 신체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자는 55세 이상

나. 경 력 (교육경력, 교육연구, 교육행정경력 통산)

1) 30년 이상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나 재직중 각급 기관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

다 재직중 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장의 표창을 받은 자.

2. 수당지급일 : 1976년 2월 28일

3. 신청기간 : 1976년 1월 18 ~ 1월 27일 (10일간)

4. 신청절차

소정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소속기관 및 감독청을 거쳐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5. 지급액

기준 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 결정통지

지급대상자의 근무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장소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 또는 당 교육위원회에 문의할 것.

197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제 71 호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공인공고

민방위 기본법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민방위 협의회 위원장 공인을 신조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12.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박용 회

다 음

1. 공인의 명칭 신설동 민방위협의회위원장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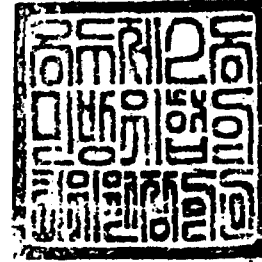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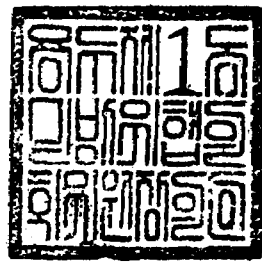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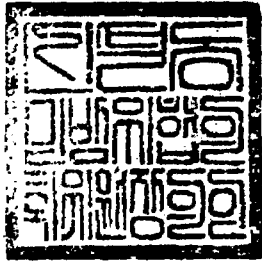
용무제 1동	·
용무제 2동	·
제기제 1동	·
제기제 2동	·
제기제 3동	·
전농제 1동	·
전농제 2동	·
전농제 3동	·
전농제 4동	·
담십제 1동	·
담십제 2동	·

당심리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당심리제 4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장안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청암리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청암리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화기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취경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이문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이문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이문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전북제 1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전북제 2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전북제 3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전북제 4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전북제 5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상봉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북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망우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신내동	민방위협의회 위원장 인 (직인)

2. 공인의 인부 (별첨)

3. 사본계시 년월일시 : 1975.12.10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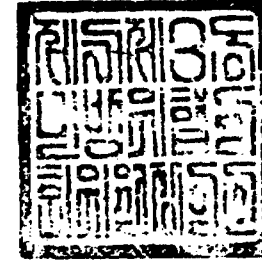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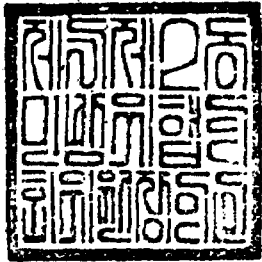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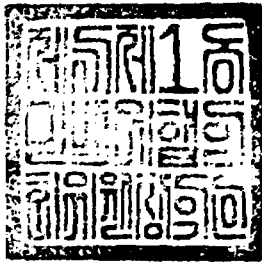
동민 방위협 의회 위원장인 인영



신 선 동

용 두 계 1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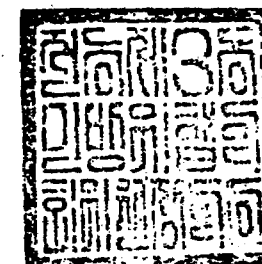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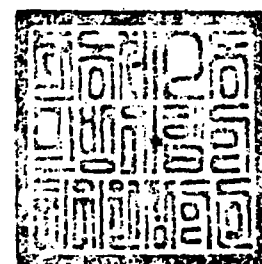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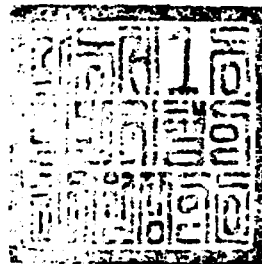
용 두 계 2 동



계 기 계 1 동

계 기 계 2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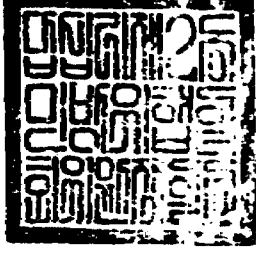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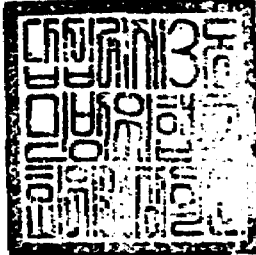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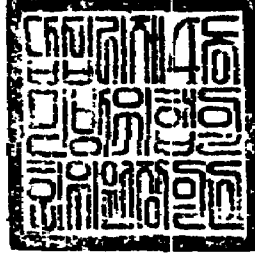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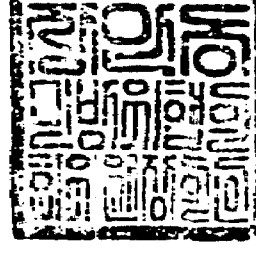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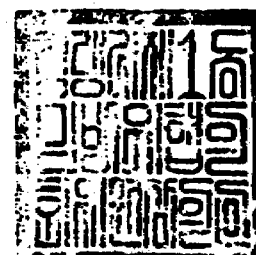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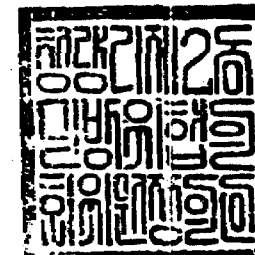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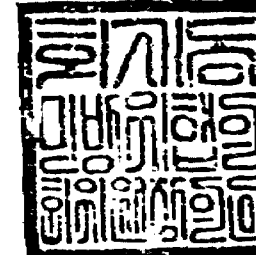
계 기 계 3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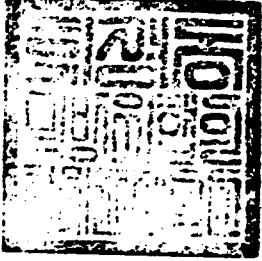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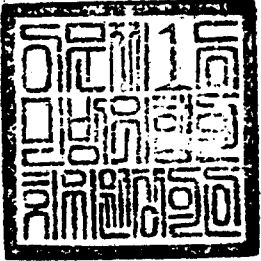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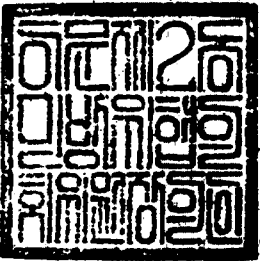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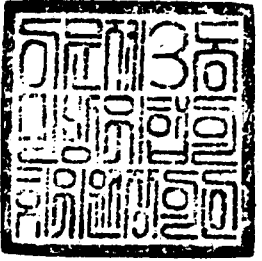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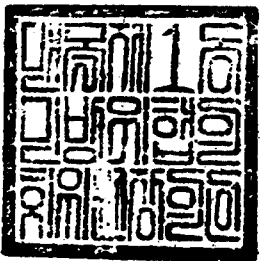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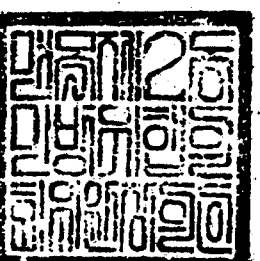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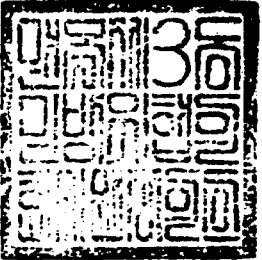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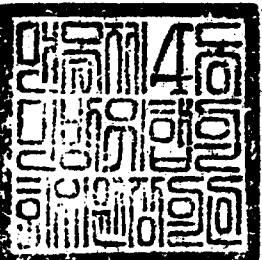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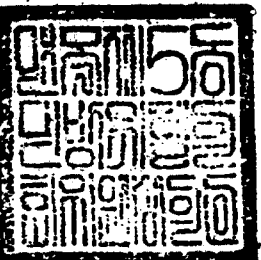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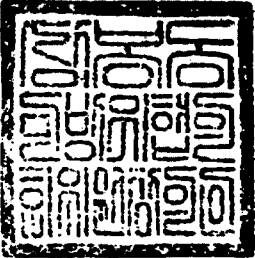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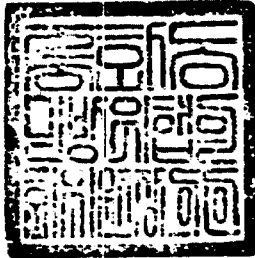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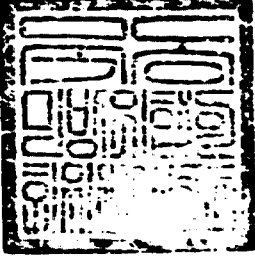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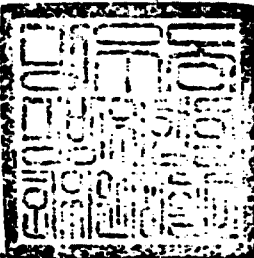

건 농 계 1 동

건 농 계 2 동

건 농 계 3 동

		
<p>전 남 제 4 동</p>	<p>담 심 리 제 1 동</p>	<p>담 심 리 제 2 동</p>
		
<p>담 심 리 제 3 동</p>	<p>담 심 리 제 4 동</p>	<p>장 안 동</p>
		
<p>청 랑 리 제 1 동</p>	<p>청 랑 리 제 2 동</p>	<p>최 기 동</p>

		
<p>위 경 동</p>	<p>이 문 계 1 동</p>	<p>이 문 계 2 동</p>
		
<p>이 문 계 3 동</p>	<p>면 목 계 1 동</p>	<p>면 목 계 2 동</p>
		
<p>면 목 계 3 동</p>	<p>면 목 계 4 동</p>	<p>면 목 계 5 동</p>

		
상 봉 동	중 화 동	북 동
		
망 우 동	신 내 동	
<div data-bbox="384 1384 683 146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 령</div> <p>© 1975. 12. 10 시 민 과 지방학 무 임 경 수 외 약 과 근무를 명 함 시 민 과 지방축 산 이 영 연 기 사 보</p>	<p>농 경 과 근무를 명 함 시 부 지방기 계 감 명 때 위 생 처 리 장 기 원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 의 규 정 에 의 거 파 면 에 저 합 은 수 3 과 지방기 계 사 서 원 도 지 방 공 무 원 법 제 69 조 제 1 항</p>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6 월에 처함.

대현삼 지방건기사 김복동
백수지 기자 부직을 명함.

5 호봉을 급함.

주택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운수 3 과 지방기계사 서원도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전병홍
보(별리)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최수점
보(별리) 영등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오광배
보(별리) 강남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보건소 지방보건원 박종오
기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강남구보건소 지방보건원 권원형
기 송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원 강영안
기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 1975. 12. 11

도봉구서 지방행정기 박양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정심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5.8.20 도봉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파면)을 동일자로
변경전처에 처함.

성동구근무를 명함.

© 1975. 12. 15

성북구서 지방행정기 김영선
서기 이상계회관보좌관실 근무를명함.

관악구서 지방행정기 최규선
서기 이상계회관보좌관실 근무를명함.

마포구서 지방행정기 강태웅
서기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명함.

도봉구서 지방행정기 심영희
서기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명함.

도봉구서 지방행정기 고준기
서기 조경과근무를 명함.

성동구서 지방행정기 이영석
서기 종로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서 지방행정기 이상선
서기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서 지방행정기 김익환
서기 보건소 근무를 명함.

제 533 호

시

보

75.12.11 33-33

<p>속산물위생검사소 근무를 명함.</p>	<p>마포구 지방행정사 김영기 동대문구 보건소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p>	

0177